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3. 11. 20.(월)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교 육 위 원 회수 석 전 문 위 원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이욱희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O 발의일자: 2023년 10월 24일

O 회부일자: 2023년 10월 25일

3. 제안 이유

O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 현장 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함.

4. 주요내용

- O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O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O 기본방향 및 현장실습의 운영기준 등(안 제5조~안 제6조)
- O 현장실습운영위원회(안 제7조)
- O 현장실습의 방법(안 제8조)
- O 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등(안 제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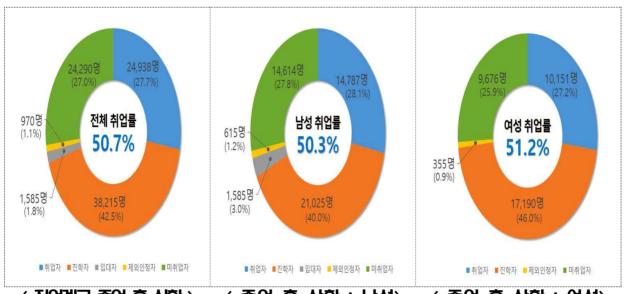
- O 사전교육의 실시 등(안 제10조)
- O 현장실습협약의 체결(안 제11조)
- 현장지도·점검 등 및 학생의 안전보장(안 제12조~안 제13조)
- 현장실습산업체의 역할 및 현장실습의 평가(안 제14조~안 제15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6조~ 안 제17조)
- O 표창 등 및 시행규칙(안 제18조~안 제19조)

5. 검토 의견

가. 조례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해 교육감의 책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 및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함.
- 현장실습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직업 체험 경험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는 일련의 교육활동임.
- 그러나, 현장실습 과정에서 기업체가 학생을 근로자로 인식하고 노동 인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 미이행, 안전사고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O 충북도교육청은 매년 현장학습 산업체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 제고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임.

○ 2020년 교육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전체취업률은 50.7%로 이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체험하게 되는 비율과 비례하므로 현장실습에 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사료됨.



< 직업계고 졸업 후 상황 > 〈 졸업 후 상황 : 남성〉 〈 졸업 후 상황 : 여성>

○ 또한, 교육부는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자 2018년 2월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발표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펼쳐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현장실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직무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 우수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 또한 상승하는 추세임.

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교육감의 책무와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여 조례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였음.

- 안 제5조 및 제6조는 조례안의 기본방향 및 현장실습의 운영 기준 등을 규정하여 현장실습을 통해 다양한 직업 체험, 현장 적응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학교장의 역할과 노력을 명시화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권 보장 및 심리검사와 상담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장학습을 운영하도록 규정함.
- 또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에 근거하여 교육감이 운영 기준 및 매뉴얼의 수립을 위해 선도기업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
- O 안 제7조는 학교장이 현장실습계획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 O 안 제8조 및 제9조는 현장실습의 방법과 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내실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전교육 실시, 현장실습협약의 체결과 현장지도·점검 등을 규정화하여 학생들의 기본 인권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실습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학생의 안전보장을 위해 「산업재해보상 보호법」 제123조에 따른 보험급여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공제급여 청구에 대한 부분과 학교 장이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장실습 산업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현장실습의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운영 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하고,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표창과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노동인권이 존중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최적의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높다고 할 것임.
- 본 조례안은 직업계고 학생이 안전하게 사회직장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높다고 할 것임.
- 참고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원·관리하고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이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9개¹) 시도 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아울러 「충청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업 발굴 및 학습 중심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¹⁾ 서울, 경기, 인천, 세종, 광주, 전북, 전남, 울산, 부산

*추계결과

(단위: 억원)

| 연도별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비고 |
|--------|------|------|------|------|------|----|
| 직업계고 수 | 26 | 26 | 25 | 25 | 25 | |
| 지원 예산 | 5.55 | 5 | 4.95 | 4.95 | 4.95 | |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2023. 기준)

(단위: 명)

| 대상학교 | 1학년 | 2학년 | 3학년 | 계 |
|----------|-------|-------|-------|-------|
| 직업계고 26교 | 3,583 | 3,058 | 3,082 | 9,723 |